

2017.07.31

'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' 사전안내

1. 개요

- 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세관장이 결정,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.
- 본 정보는 사전 안내로서 시행방안이 확정 발표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2. 주요사항

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

현재	개정안
<p>세관장이 결정, 경정하거나 결정,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▪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	<p>세관장이 결정, 경정하거나 결정,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세법상 벌칙(과태료 제외)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▪ 수입자의 고의, 중과실이 있는 경우

2017.07.31

'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' 사전안내

2. 주요사항

-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'가산세' 부과
 -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관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신고 유도
-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
 -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,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
- ④ 시행예정일
 - 2018년 초 시행(수정신고, 결정,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) 예정 - 2017.8.3. 이후 관세청 보도자료 배포 예정